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841
----------	-------

발의연월일 : 2026. 3. 30.

발 의 자 : 김승원 · 민병덕 · 김종민
임호선 · 문대림 · 서미화
김원이 · 김 윤 · 허 영
박수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 등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된 범죄를 일반법원의 관할로 하고, 변사자가 군인이거나 병영 등에서 발견된 경우 군검사가 검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부는 이러한 규정을 모든 사망사건이 아닌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 민간에 이첩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여 실무상 사망사건의 일차적 판단권을 군이 행사하고 있음. 군인 등 사망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를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의 관할로 둔 것은 의문사를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현행법상 이러한 해석의 여지를 제거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군인 등의 사망사건의 일차적 수사권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갖도록 명시하고 변사자의 검시 또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군 의문사 사건을 민간에서 관할하도록 하는 입법취지를 명

확히 하고자 함(안 제228조의4 신설 등).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사람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을 “사람의 사망과 관련한”으로 한다.

제22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8조의4(사망사건의 수사권)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사망사건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권을 가진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도 수사권을 가진다.

제26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4조(변사자의 검시) 변사자의 검시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222조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수사중인 사망사건은 제228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검

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이첩한다. 이 경우 이미 행하여진 검찰사무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신분적 재판권) ① (생략)	제2조(신분적 재판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 및 그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u>사람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u>	2. ----- ----- <u>사람의 사망과 관련한</u>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제228조의4(사망사건의 수사권)</u> <u>「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사망 사건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권을 가진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군검사와</u>

<u>제264조(변사자의 검시) ① 변사자 또는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체일 때에는 군검사가 검시(檢視)하여야 한다.</u> <u>② 변사자 또는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가 제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사체일지라도 병영이나 그 밖의 군사용 청사, 차량, 함선 또는 항공기에서 발견되었을 때에는 군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u> <u>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긴급할 때에는 영장 없이 검증을 할 수 있다.</u> <u>④ 군검사는 군사법경찰관이나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u>	<u>군사법경찰관도 수사권을 가진다.</u> <u>제264조(변사자의 검시) 변사자의 검시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222조를 준용한다.</u>
---	---